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동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종철

전화 02-2204-4201 / 팩스 02-2204-4844

보도자료

2022. 12. 9.(금)

제 목

서울동부지검, 위증사범 집중 수사
- '22. 11. 한 달간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5명 적발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동부지검 공판부(부장검사 조영희)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, '22. 11. 한 달간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5명을 적발하여 그 중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(6명은 계속 수사 중)
 - 수사 결과,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법정에서 대수롭지 않게 거짓 증언을 하고, 나아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며 위증을 사주하는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였음
- ※'22.9.10.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됨
-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허위 증언으로 실제진실을 왜곡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

1 개요

-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범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,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잘못을 축소 내지 은폐하고자 법정에서 죄의식 없이 허위 증언하는 위증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

- 이에 서울동부지검에서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국가의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사범에 대하여 **집중적인 수사를 실시**하였음

2 수사 결과

- '22. 11. 한 달간 **총 10건의 사건에서 15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을 적발**하였음
- 위증의 주요 동기로는 '**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**으로 인한 경우'가 가장 많았고(7명), '**경제적 이해관계**'로 얽힌 경우(2명), '**증인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** 위한 경우'(2명)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, 특히 위증사범 중 4명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인해 위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-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적발된 위증사범 15명 중 **9명을 불구속 기소**하였으며,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 추가 확인 등을 위해 계속 수사 중임

3 대표적 수사 사례

□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폭행 피해가 없었다고 위증한 사례

- A는 피고인 B의 오랜 지인이나, B와 다툼이 되어 B로부터 야구배트로 수 회 맞아 손가락과 다리가 골절된 사실이 있음에도 B의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**B가 야구배트로 땅을 내리쳤을 뿐 자신을 폭행한 적은 없었다고** 위증

□ 지인인 피고인(경찰관)의 처벌을 막기 위해 위증한 사례

- A는 지인인 B(경찰관)와 통화하며 C의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면서 C가 골프채를 사 줄 것이라고 대화한 내용이 자신의 휴대폰에 자동녹음되는 바람에 B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, 증인으로 출석하여 **B가 청탁 명목으로 골프채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고** 위증

□ 자신이 속한 아파트상가 번영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한 사례

- A와 B는 아파트상가 번영회 회원들로서, 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C가 회원들의 서명을 받지 않고 '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.'라는 문건을 위조하였음에도, C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위 문건을 보여주며 회원들의 서명을 받았고 자신들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위증

□ 성매매 당사자가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

- A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서, B와 성매매 도중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, B의 성매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B는 단속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위증

□ 군대 동기의 부탁으로 상관모욕 발언이 없었다고 위증한 사례

- A는 군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여자 상관을 지칭하며 "따먹고 싶다."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, 친한 군대 동기였던 B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였고, B는 A의 상관모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는 케이크가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는 말을 했을 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

4

향후 계획

- 서울동부지검은 향후에도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여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☐